

특정감사

2016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특정감사 결과 처분요구서

2016. 0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1
II.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2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 배경 및 목적

예술위원회 행정업무 진행 과정에서 부적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특정 감사를 통해 행정업무 개선이 필요하였다.

이에 최근 발생한 예술위원회 행정업무 운영 및 처리 부적정 사례를 집중 점검함으로써 사무관리규정 및 위임전결규정 준수 등 올바른 행정절차 이행 시스템을 정착시키고자 이번 감사를 실시하였다.

2. 감사 범위 및 감사 중점

이번 감사는 예술위원회 행정업무 진행 및 운영에 대한 부적정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다.

3. 감사 기간 및 인원

2016. 8. 1.부터 같은 해 8. 19.까지 감사인원 4명이 실지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후 감사부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2016. 8. 26.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Ⅱ.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201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특정감사 총괄<처분요구사항>

번호	제 목 (지적사항)	처분 요구사항	관계부서
1	2015년(추경)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행정업무처리 부적정	개선	순회사업부
2	2016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추진 행정 업무처리 부적정	개선	문화누리부
3	2016년 대학로봄업프로젝트 행정업무 처리 부적정	개선	극장운영부
4	예술위원회 행정업무 운영 및 처리 부적정 관련자 교육 실시	개선	기획조정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개 선

제 목 2015년(추경)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행정업무처리 부적정

관 계 부 서 공연예술본부 순회사업부

내 용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라 한다) 순회사업부에서는 2015년 5월에 발생한 중동호흡기증증후군 메르스(MERS) 사태 이후 침체된 공연예술계 활성화 및 메르스 피해 지역민·업종 종사자의 문화향수 기회 제공을 위해 2015년 7월에 “2015년(추경)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사업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1] 2015년(추경)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내역

구분	사업유형	수혜대상	순회 대상처 (예정)	선정 단체수 (예정)	협력기관
공모 사업 (100억원)	사회복지시설 순회사업 (30억원)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시설, 특수학교, 다문화관련 시설, 청소년 쉼터 등	600개처	75개 단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여성가족부
	농산어촌 순회사업 (20억원)	서울특별시, 6대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농산어촌 지역	400개처	50개 단체	농림축산식품부, 동협중앙회
	주민자치센터 순회사업 (20억원)	전국 주민자치센터, 시군구청 등	400개처	50개 단체	지자체
	학교순회사업 (30억원)	전국의 초·중·고교 (서울, 6대 광역시 포함)	600개처	75개 단체	교육부
합계			1,400개처	175개 단체	
기획형 공모 사업 (70억원)	다중집합시설 기획 공연 (30억원)	민간공연단체, 다중집합시설 이용자, 주변상인 등	600개처	75개 단체	서울 메트로 등
	지역문화 활성화 기획 공연 (40억원)	지역예술단체, 지역주민 등	20개처	별도구성	지자체, 지역 문화재단 등
맞춤형 기획 사업 (30억원)	메르스 피해 시설 공연 (10억원)	메르스 집중 피해 병원 환자 및 의료진 등	50개처	별도구성	서울삼성병원, 평택성모병원, 대전대청병원 등
	메르스 피해 지역 파크 콘서트 (20억원)	메르스 피해 지역	10개처	별도구성	

* 자료 : “2015년도 (추경)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결재문서

“2015년(추경)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중 맞춤형기획사업인 “메르스 피해 시설공연 사업”(이하 ‘메르스사업’이라 한다/예산 10억원) 은 메르스 집중피해병원 환자 및 의료진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치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 향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1. 별도단체 구성 시 위원장 보고 및 결재행위 없이 사업추진단 구성 추진

순회사업부에서 ‘2015년(추경)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기본업무계획으로 ‘2015년도 (추경)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문화복지부-1175, 2015.07.29.)’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 계획서를 보면 ‘메르스사업’과 같은 기획사업은 별도의 단체를 구성하여 추진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2015년 ‘메르스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추진단 구성을 위해 2015. 7월 당시 사업담당자 ○○○은 위원회 40주년 행사(2013년) 추진 시 함께 일했던 “○○○(공연기획사 A&A 대표)”를 당시 부서장이었던 ○○○에게만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 “아르코의료기관순회사업추진단”을 구성하였다. 추진단 구성과 관련한 위원장 보고, 추진단 구성 계획수립 및 위원장 결재 등의 행정업무처리 없이 추진단 설립을 위한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는 문서(문화복지부-1238, 2015.08.06.)만 부서장 전결로 처리하였다. 순회사업부에서 수립한 ‘2015년도(추경)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문화복지부-1175, 2015.07.29.)’ 계획서 안에는 ‘기획사업 별도단체 구성’이라는 방침이 정해져 있어 기획사업으로 추진 예정이었던 ‘메르스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별도단체를 구성 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이 문서가 위원장까지 결재를 득한 사항이므로 별도단체 구성 시에도 별도단체 구성 계획에 대해 위원장의 결재를 받았어야 했다.

2. 위원장 보고 및 결재 행위 없이 사업추진단에 지원금 10억원 교부

순회사업부에서는 추진단 구성과 관련한 어떠한 사항도 위원장 결재 및 보고 절차 없이 진행하였고 또한 위원장의 결재를 득하지도 않고 구성된 추진단에 총 10억원(1차 지원금 5억<2015.08.12.> 및 2차 지원금 5억<2015.11.17.>)의 지원금을 교부 하였다.

예술위 사무관리규정 제18조(결재) 제1항에 ‘문서는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 ‘위원장은 사무의 내용에 따라 그 부서 또는 당해 업무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별첨1 참조)

이상과 같이 ‘메르스사업’ 관련 추진단 구성 및 지원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사무관리규정」 및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위원장의 결재 및 보고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별첨] 사무관리규정 및 위임전결규정

조치할 사항

[개선] 공연예술본부장은 사업 추진 시 사업기본업무계획의 추진방침 준수, 「위임전결규정」 상 위원장 결재사항 준수 등 정확한 행정절차 이행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사무관리규정 및 위임전결규정

* 사무관리규정 제18조 (결재)

- ① 문서는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서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그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② 위원장은 사무의 내용에 따라 그 부서 또는 당해 업무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 위임전결규정 제5조 (전결사항)

- ① 사무처장, 본부장, 부장, 자료원장, 후원센터장, 인력센터장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 1 및 별표2와 같다.

* 위임전결규정 [별표2] 내 업무계획 관련 ‘위임전결사항’

업 무 내 용		위원장	전결권자			
			사무처장	본부장	부장 (원,센터)	담당자
1) 업무계획						
(1) 계획수립	연간 기본 업무계획(부서별)		●			
	연도중반 신규사업계획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세부추진계획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 계획변경	연간 기본 업무 계획(부서별)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연도중반 신규사업계획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세부추진계획	중요사항			●	
		일반사항				●
(3) 결과보고	연간 종합결과보고(부서별)		●			
	단위사업 결과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한 국 문 화 예 술 위 원 회

개 선

제 목 2016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추진 행정업무처리 부적정

관 계 부 서 문화나눔본부 문화누리부

내 용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라 한다) 문화누리부에서는 경제적 소외계층 대상 문화·여행·스포츠 관람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 양극화 해소,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51만명에게 개인별 5만원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16년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의 추진방식은 전국의 17개 지자체와 예산을 매칭(국비<기금> 70%, 지방비 30%) 하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며, 국비(기금) 지원 시 1차, 2차 두 차례로 나누어 서울특별시에 7,934백만원 등 총 54,250백만원을 17개 지자체에 교부하고 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추진을 위한 기관별 역할은 다음 [표1]과 같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책방향 및 기본계획 수립 → 예술위에서 세부운영계획 수립, 기금교부·정산 등 → 17개 지자체에서 지방비 매칭, 사업비 교부 → 지역주관처에서 집행·정산·실적 보고 등으로 이어지는 추진체계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예술위의 역할은 2016년도 사업 추진을 위해 17개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교부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원금 지급계획을 수립하고 지원금을 교부하는 것이다.

[표1]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기관별 역할

2016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지침(2016.02.), 문화체육관광부

기관	역 할
문화체육관광부	○ 정책 방향 및 기본계획 수립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사업총괄) 세부계획수립, 사업운영총괄 및 점검·평가 ○ (예산총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기금 교부 및 정산 ○ (지원업무) - 지자체 및 지역주관처 담당자 교육·지원 - 통합시스템 운영,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등 - 통합이용권 사업 홍보 총괄 ○ (기타)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3조의4항의 업무 수행
광역자치단체 (17개 시도)	○ (사업계획) 각 시도별 '16년도 사업계획 수립 ○ (예산총괄) 지방비 매칭, 기초자치단체 및 지역주관처 교부 ○ (운영) - 지역별 사업총괄, 지역주관처 선정 및 관리 감독 - 카드사업 운영 및 관리(카드발급 및 이용률 제고) - 지역 유관기관 협력 및 지역 내 홍보 협조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 (예산총괄) 지방비 매칭, 지역주관처 교부 ○ (운영) - 지역별 카드사업 총괄 및 관리책임 - 관내 복지시설 문화누리카드 사용 관리 감독 - 지역별 카드 발급 및 이용 홍보 등 서비스 전달
읍·면·동 주민센터	○ (카드발급) 카드발급업무 수행 ○ (안내/홍보) 카드 발급 시 카드이용 안내 및 홍보
지역주관처	○ (카드사업) - 사업비 집행·정산, 실적보고 및 평가 자료제출 - 통합문화이용권 가맹점 관리, 조사, 발굴 - 지역홍보 추진 ○ (카드촉진사업) - 카드이용 불편 계층의 이용 촉진 프로그램 발굴
카드사(농협)	○ (카드발급) 카드 발급, 정산 관리, 통계 및 집행실적 관리 ○ (가맹점관리) 카드가맹점 관리 및 전수조사, 사업홍보 등 ○ (콜센터) 전담 콜센터 등 이용자 편의서비스 운영

1. 2016년 통합문화이용권사업 기본업무계획 미수립으로 인한 위원장 미결재

예술위 「사무관리규정」 제18조(결재) 제1항에 ‘문서는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 ‘위원장은 사무의 내용에 따라 그 부서 또는 당

해 업무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위임전결사항」에 '연간기본업무계획' 수립은 최고결재권자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다.(별첨1 참조)

그런데 2016년도에 문화누리부에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1차 지원금 교부 관련 결재문서 중 최고 결재권자인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문서가 1건도 없다.

[표2], [표3]과 같이 2016년도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사업기본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최고결재권자인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업무를 추진하지 않았고, 또한 17개 지자체에 1차 지원금을 교부하는 상황에서도 사업기본업무계획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총 27,127백만원의 지원금을 부서장 전결로 처리하여 교부하였다.

[표2] 2016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1차 지원금 교부 전 관련 결재문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654(2016-02-11)“2016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계획 및 지침 송부”
 - 문화누리부-216(2016.02.16.)“2016년도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세부예산 및 교부계획(안) 공지” : ○○○ 문화누리부장 전결
 - 문화누리부-327(2016.02.29.)“2016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시도 사업계획서 승인 요청” : ○○○ 문화누리부장 전결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1084(2016.02.29.)“2016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시도별 사업계획 승인 통보”
- ※ 2016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1차 지원금 교부 공문(전체 ○○○ 문화누리부장 전결)

[표3] 지자체별 공문 결재일 및 지급액

(단위 : 백만원)

지자체	공문 결재일	지급액	지자체	공문 결재일	지급액
강원도	2016.3.4	1,139	세종시	2016.3.4	71
경기도	2016.3.9	4,344	울산광역시	2016.3.4	354
경상남도	2016.3.9	1,756	인천광역시	2016.3.8	1,526
경상북도	2016.3.9	1,797	전라남도	2016.3.4	1,719
광주광역시	2016.3.4	1,222	전라북도	2016.3.7	1,790
대구광역시	2016.3.4	1,774	제주도	2016.3.4	431
대전광역시	2016.3.9	902	충청남도	2016.3.4	1,071
부산광역시	2016.3.8	2,352	충청북도	2016.3.4	912
서울시	2016.3.4	3,967			

2015년도에는 아래 [표4]와 같이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의 기본업무계획을 수립하였고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표4] 2015년 통합문화이용권 기본계획 수립 및 보조금 1차 지급 절차 관련 결재문서

○ 2015년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운영 기본계획 수립 : 2015.2.10.(○○○ 위원장 결재)
○ 2015년 (복권)통합문화이용권사업 보조금 1차 지급 알림 : 2016.2.26.(문화누리부장 전결)

2. 2016년 통합문화이용권사업 1차 지원금 교부 시 사업 담당자 부재에 따른 업무분장 조정 처리 미흡

[표5]와 같이 2015. 12. 4. 문화누리부 업무분장에 따르면 당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예산 교부 담당자는 과장 ○○○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1차 지원금 교부
당시(교부문서 결재일 : 2016.3.4.~3.9) ○○○은 2016. 1.11.~3.15. 까지 기관의 경영
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합숙으로 예산 교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 이럴 경우
부서장은 한시적이거나 그 업무를 다른 직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분장 및 업무
인수인계 처리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문화누리부장은 사업 담당자 부재로 인한
대체인력 활용 시 업무분장 조정 및 업무 인수인계 과정을 거치지 않고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예산 교부업무를 [표6]과 같이 과장 ○○○, 과장 ○○○ 등 2명에게 지시하여
수행하도록 하였다.

[표5] 2016년 통합문화이용권사업 1차 지원금 교부 시 문화누리부 업무분장

(2015.12.4. 작성)

부서원(직위)		담당 주요업무
○○○(부장)		○부서업무 총괄
※나주 근무	○○○(과장)	<u>○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예산 교부·관리·정산 및 지자체 업무 협력</u>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예산 집행 점검 및 관리 ○통합문화이용권 중기재정계획·기금운용계획 등 작성 ○통합문화이용권 자원확충 업무 ○통합문화이용권사업 국회업무

[표5] 2016년 통합문화이용권사업 1차 지원금 교부 시 문화누리부 업무분장

(2015.12.4. 작성)

부서원(직위)		담당 주요업무
		○ 통합문화이용권사업 평가 - 성과평가 및 대내외 평가 업무 총괄 - 경영실적평가, 복권기금사업 평가 - 재정사업 자율평가
	○○○(과장)	○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17개 시·도 주관처 관련 업무 - 사업관리 점검, 행정 지원, 교육, 평가, 사업 정산 - 지자체 업무 협력, 기획사업 실적 관리 ○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모니터링 ○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연구조사 ○ 통합문화이용권 복권기금 평가 관련 업무(협력)
	○○○(과장)	○ 통합문화이용권사업 홍보 업무 - 사업 홍보 관련 대외 업무 협력 ○ 통합문화이용권 복권기금 평가 관련 업무(협력) ○ 파견직 운영

[표6] 2016년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예산 교부 관련 문서 및 기안자

○ 문화누리부-216(2016.02.16.)“2016년도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세부예산 및 교부계획(안) 공지” : ○○○ 과장 ○ 2016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1차 지원금 교부 공문 : ○○○ 과장

[별첨] 사무관리규정 및 위임전결규정

조치할 사항

[개선] 문화나눔본부장은

- ① 사업 추진 시 사업기본업무계획의 수립 및 추진방침 준수, 「위임전결규정」 상 위원장 결재사항 준수 등 정확한 행정절차 이행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 ② 사업담당자 부재로 인한 대체인력 활용 시 업무분장 조정 및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사무관리규정 및 위임전결규정

* 사무관리규정 제18조 (결재)

- ① 문서는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서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그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② 위원장은 사무의 내용에 따라 그 부서 또는 당해 업무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 위임전결규정 제5조 (전결사항)

- ① 사무처장, 본부장, 부장, 자료원장, 후원센터장, 인력센터장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 1 및 별표2와 같다.

* 위임전결규정 [별표2] 내 업무계획 관련 ‘위임전결사항’

업 무 내 용		위원장	전결권자			
			사무처장	본부장	부장 (원,센터)	담당자
1) 업무계획						
(1) 계획수립	연간 기본 업무계획(부서별)		●			
	연도중반 신규사업계획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세부추진계획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 계획변경	연간 기본 업무 계획(부서별)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연도중반 신규사업계획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세부추진계획	중요사항			●	
		일반사항				●
(3) 결과보고	연간 종합결과보고(부서별)		●			
	단위사업 결과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한 국 문 화 예 술 위 원 회

개 선

제 목 2016년 대학로봄업프로젝트 행정업무 처리 부적정

관 계 부 서 공연예술본부 극장운영부

내 용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 극장운영부에서는 자체 운영시설인 아르코 예술극장, 대학로예술극장, 아르코미술관 등을 연계하여 대학로를 찾는 일반시민, 지역주민 등 외부관람객에게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정기 공연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일상적·보편적 예술향유 증대에 기여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 교부 예산 403백만원(일반수용비 400백만원, 사업추진비 3백만원)으로 2016년 대학로봄업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 2016년 대학로봄업프로젝트 사업기본업무계획 미수립 및 위임전결처리 부적정

예술위 「사무관리규정」 제18조(결재)에 따르면 ‘문서는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그 부서 또는 당해 업무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임전결규정」 제5조 (전결사항)과 [별표2] 위임전결사항에 따라 ‘연간 기본 업무계획’, ‘연도중반 신규사업계획’의 계획수립과 계획변경, 결과보고 업무는 최고결재권자로 명시된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사업 내용의 변경 시에도 중요사항일 경우 이에 따른 사유와 변경내역이 포함된 변경계획을 수립한 후 「위임전결규정」 내 [별표2] 위임전결사항에 따라 최고

결재권자인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별첨1 참조)

따라서 2016년 대학로봄업프로젝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추진하였어야 했다. 2016년 대학로봄업프로젝트 사업내용은 ‘2016년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운영』 사업계획 승인 및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극장운영부-278, 2016.2.4)’ 문서 내 붙임문서인 ‘2016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사업계획서’(이하 ‘극장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지만 대학로봄업프로젝트는 연간 단위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기본업무계획을 수립하는 절차가 필요하였다.

한편 ‘극장사업계획’ 내 대학로봄업프로젝트 추진방식을 보면 1단계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친 후 2단계로 참여단체, 참여프로그램을 확정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명시하였지만 실제로는 시행하지 않았다. 기본업무계획이 미수립된 상태에서 2016년 대학로봄업프로젝트의 세부추진계획 역시 수립하지 않음으로써 업무처리 기본방침을 준수하지 않았다.

또한 2016년 대학로봄업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주요 변경사항 및 신규 발생 사안에 대해서는 변경계획을 수립한 뒤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했으나 [표1]과 같이 2016년 대학로봄업프로젝트는 사업 내용의 변경이나 신규 발생 사안에 대한 변경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극장사업계획’ 내 포함된 2016년 대학로봄업프로젝트의 사업계획을 보면 현재까지 진행된 대학로봄업프로젝트 사업은 당초 계획한 프로젝트의 목적 및 취지와 부합하지 않게 추진되어 왔다. ‘극장사업계획’에서 2016년 대학로봄업프로젝트의 내용은 ‘렉처 퍼포먼스’, ‘리버런’, ‘아르코 여름 축제’ 등 각각의 사업 목표를 가진 3가지 유형의 세부사업([표1] 참조)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관람객의 체험과 참여를 강조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표1] 2016년 대학로봄업프로젝트 최초 사업계획 및 실제 추진내역

극장사업계획 내 최초 사업계획 (2016.2.7)	상반기 기획공연계획 (2016.2.19)	실제 진행된 공연 (2016.3월~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렉처 퍼포먼스 (Lecture Performa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 : 다양한 장르 융복합(연극, 퍼포먼스, 음악, 영상 등) - 극장의 가변성을 최대한 활용한 다장르 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람객 참여 및 체험 확대 - 새로운 강연, 공연 체험을 원하는 일반인 대상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	전통예술 공연 <씻김, 상여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버런 (Riverru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 : 퍼포먼스 - 영상과 무용을 결합한 퍼포먼스를 바탕으로 관객의 참여를 통해 대중 예술 체험 및 공감 확산 	전통예술 공연 <진도 씻김굿>	연극 <사랑해, 엄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르코 여름 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 : 다양한 장르 복합 - 대학로의 과거와 현재, 순수예술과 서브컬처, 예술과 일상, 현대와 대중 문화 접목 복합예술 페스티벌 개최 	연극 <사랑해, 엄마>	<9시에 만나요>
	무용 공연 “관객친화형 무용 프로젝트”	<로튼 애플>
		<원로연극제>

그러나 극장운영부에서는 대학로봄업프로젝트의 당초 계획에 없는 상반기 기획공연계획(‘2016년도 공연장 상반기 기획공연계획 수립 및 추진’, 극장운영부-414, 2016.2.19)을 수립하였고, 실제 진행된 공연 프로그램 또한 관람객의 체험과 참여라는 대학로봄업프로젝트의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는 공연들로 구성되어 있다. 상반기 기획공연계획에 나타난 ‘진도 씻김굿’ 등 4개의 공연 프로그램 중 관객친화형 무용프로젝트를 제외하고는 관람객의 체험 및 참여와는 거리가 먼 일반적인 관람 형태의 공연이었으며, 관객친화형 무용프로젝트의 명칭 또한 <우리끼리만 아는 걸로 한다>로 지정되었다가 다시 <9시에 만나요>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보고하는 변경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또한 이처럼 공연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된 공연명으로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변경 전 계약서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상반기 기획공연계획’의 최종결재자는 사무처장 전결로 처리하였는데, 실제 진행된 5개 공연 중 ‘씻김, 상여소리’, ‘사랑해, 엄마’, ‘9시에 만나요’, ‘로튼 애플’ 등 4개 공연의 추진계획은 본부장 전결로 처리하였으며, ‘원로연극제’는 위원장 전결로 처리하는 등 최종결재자의 일관성이 없었다. ‘상반기 기획공연계획’은 대학로 불협프로젝트 최초 사업계획 추진 방침의 변경일 뿐만 아니라, 신규로 추진되는 공연이므로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추진하였어야 했다.

신규로 추진된 공연인 ‘로튼 애플’은 ‘극장사업계획’뿐만 아니라 ‘상반기 기본공연계획’ 내에도 포함되지 않은 공연으로서 ‘2016년 대학로불협프로젝트 <로튼 애플(Rotten Apple)>기획공연계획 수립 및 추진(극장운영부-1138, 2016.4.15)’을 통해 최초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로튼 애플’의 경우 신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므로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최고결재권자인 위원장의 결재를 받았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튼 애플’ 기획공연 계획은 위원장이 아닌 본부장 전결로 업무를 처리하였다.

2. 2016년 대학로 불협프로젝트 예산계획 수립 및 집행 부적정

공연의 소요예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각 공연마다 제작비뿐만 아니라 부대비용(홍보비, 인쇄비, 대관료, 업무추진비 등)까지 모두 산출하여 예산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립된 예산안은 기본운영계획 내 포함되어 최고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집행되어야 한다. 이후 세부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며 발생하는 문서들은 기본운영계획 문서를 근거로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전결권자들의 전결 처리로 진행할 수 있다. 즉, 기본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위원장 결재를 득하였다면 이후 공연별 세부

추진계획은 「위임전결규정」에 의거하여 본부장 또는 부장 전결처리가 가능하다.

[표3] 2016년 대학로 봄업프로젝트 예산계획 및 집행내역, 최종결재자 현황

(단위 : 천원)

상반기 기획공연계획 (2016.2.19)			공연별 세부추진계획			실제 집행 예산	
사업명	예산	최종 결재자	사업명	예산 (A)	최종 결재자	총액(B)	초과집 행분 (B-A)
로미오와 줄리엣	40,000	사무처장	-	-		-	-
진도 씻김굿	30,000		씻김, 상여소리	30,000	본부장	38,580	8,580
사랑해, 엄마	10,000		사랑해, 엄마	10,000	본부장	10,000	0
관객친화형무용프로젝트 (우리끼리만 아는 걸로 한다)	40,000		9시에 만나요	40,000	본부장	66,770	26,770
-	-		로튼 애플	45,000	본부장	56,140	11,140
-	-		원로연극제	300,000 ¹⁾	위원장	490,510	190,510
계	120,000		계	425,000		662,000	237,000

1) 원로연극제의 경우 3억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교부 예산이 아닌 문예진흥기금으로 편성된 예산

그러나 ‘상반기 기획공연계획’과 실제 진행된 ‘씻김, 상여소리’ 등 5개 공연별 세부추진계획에는 공연제작비에 대한 예산(‘씻김 상여소리’ 3천만원, ‘사랑해, 엄마’ 10백만원, ‘9시에 만나요’ 40백만원, ‘로튼 애플’ 45백만원, ‘원로연극제’ 300백만원)만 수립되어 있고 홍보비, 인쇄비, 대관료, 업무추진비 등 기타 부대비용 내역은 누락되어 있다. 때문에 [표3]에서처럼 실제 집행 예산은 662백만원으로 공연별 세부추진계획에서 책정한 예산 425백만원(작품 제작비)보다 237백만원(홍보비 등) 가량을 초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공연계약서와 다른 예산집행 부적정

<9시에 만나요> 기획공연의 경우 계약서(계약서 상에는 “우리끼리만 아는 걸로 한다”라는 공연명으로 체결되어 있음) 내용과 다른 예산집행을 하였는데, 공연 단체 무버(mover)와 체결한 공연계약서의 제3조 [업무분담 및 의무] 중 2항을

살펴보면 “무대기술인력(조명, 음향, 무대 스태프)을 협의된 내용에 따라 지원한다. 단, 극장소속 배정 스태프 이외의 크루(crew) 인력 고용에 따른 비용은 ‘단체’가 부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계약사항과는 달리 ‘2016년 대학로봄업프로젝트 <9시에 만나요>기획 공연추진관련 추가 크루비용 지급(극장운영부-1012, 2016.4.4)’ 문서를 통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크루(crew) 비용 4백8십만원을 예술위가 지급하였다.

4. 일상감사 대상 문서의 일상감사 결재 누락

일상감사는 예술위의 주요 집행업무에 대하여 감사부서에서 최종결재자의 결재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사전적인 감사를 말한다. 일상감사의 대상은 「일상감사의 범위와 절차 등에 관한 시행세칙」에 근거하며, 시행세칙 제2조 (범위) 조항에 따라 ‘민간보조사업 지원방침 및 결정사항’과 같은 예술위 주요 사안에 대한 결정이나, 혹은 ‘예산의 편성 및 경정’ 등 예산 및 재산관리 관련 사항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2016년 대학로봄업프로젝트는 총 예산 403백만원 규모의 국고를 집행하는 사업임에도 일상감사의 절차 없이 결재가 이루어졌다. 특히 ‘2016년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운영』 사업계획 승인(극장운영부-337, 2016.2.12)’, ‘2016년 원로연극제 기본계획(안)수립 및 추진(극장운영부-1240, 2016.4.25)’ 등 주요 사업 문서들이 일상감사를 거치지 않고 결재가 이루어졌다.

[별첨1] 사무관리규정 및 위임전결규정

조치할 사항

[개선] 공연예술본부장은

- ① 사업 추진 시 사업기본업무계획 수립 및 「위임전결규정」 상 위원장 결재 사항 준수 등 정확한 행정절차 이행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② 향후 사업 추진 시 사업기본업무계획에 사업목적, 사업내용 외 소요예산 일체를 편성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③ 「일상감사의 범위와 절차 등에 관한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일상감사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사무관리규정 및 위임전결규정

* 사무관리규정 제18조 (결재)

- ① 문서는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서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그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② 위원장은 사무의 내용에 따라 그 부서 또는 당해 업무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 위임전결규정 제5조 (전결사항)

- ① 사무처장, 본부장, 부장, 자료원장, 후원센터장, 인력센터장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 1 및 별표2와 같다.

* 위임전결규정 [별표2] 내 업무계획 관련 ‘위임전결사항’

업 무 내 용		위원장	전결권자			
			사무처장	본부장	부장 (원,센터)	담당자
1) 업무계획						
(1) 계획수립	연간 기본 업무계획(부서별)		●			
	연도중반 신규사업계획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세부추진계획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 계획변경	연간 기본 업무 계획(부서별)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연도중반 신규사업계획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세부추진계획	중요사항			●	
		일반사항				●
(3) 결과보고	연간 종합결과보고(부서별)		●			
	단위사업 결과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한 국 문 화 예 술 위 원 회

개 선

제 목 예술위원회 행정업무 운영 및 처리 부적정 관련자 교육 실시

관 계 부 서 경영전략본부 기획조정부

내 용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순회사업부, 문화누리부, 극장운영부에서는 각각 ‘2015년(추경)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2016년 통합문화이용권사업’, ‘2016년 대학로봄업프로젝트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기본업무계획의 미수립, 위원장 보고 및 결재체계 미흡, 위임전결처리 부적정, 예산계획 수립 및 집행의 부적정 등 행정업무의 운영과 처리에 있어서 ‘2016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특정감사 결과 처분요구서’와 같이 부적정 사례가 발생하였다.(2015년 추경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2016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2016년 대학로봄업프로젝트사업 관련 처분요구서 참조)

조치할 사항

[개선] 경영전략본부장은 행정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계자들에 대하여 10시간 이상의 행정실무교육을 실시하시고, 개인별 교육이수계획 및 이수 후 교육결과보고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특정감사 대상 사업 및 부서·관계자명

사 업 명	사업추진 당시 해당 부서 및 관계자
○‘15년(추경)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中 ‘메르스 피해시설 공연사업’	순회사업부 부장 ○○○ 순회사업부 대리 ○○○
○‘16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사업	문화누리부 부장 ○○○
○‘16년 대학로봄업프로젝트사업	극장운영부 부장 ○○○ 극장운영부 과장 ○○○